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물환경보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전

1. 의결주문

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등에 오염총량을 할당(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총인, kg/일 등)할 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(BOD)은 소수점 둘째자리, 총인(T-P)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할당을 하고 있음. 그러나, 할당받은 양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과하고 있어 할당 기준의 실효적 관리를 위해 할당 기준에 맞도록 과징금 산정방법을 현실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(별표 1)

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중 할당 초과에 따른 초과오염배출량 계산 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(BOD)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, 총인(T-P)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계산토록 변경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략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10. 15. ~ 11. 24.) 예정

3) 행정규제 :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2호나목1)가)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비고: 1.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는 킬로그램(kg)으로 하되,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(BOD)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(셋째 자리 절사) 총인(T-P)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계산(넷째 자리 절사)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방법 및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물환경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011